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9 선고 2022가단1098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변론 종결2022. 9. 7.(피고 1, 4.에 대하여)

무변론(피고 2, 3, 5, 6.에 대하여)

판결 선고2022. 11. 9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주식회사 C, D는 연대하여 93,914,123원을 지급하고,

나. 피고 E, F, G, H는 피고 주식회사 C, D와 연대하여 위 가항. 기재 금원 중 각 15,652,353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피고 D, E, G, H에 대한 청구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피고 주식회사 C, F에 대한 청구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인규

별지